

大邱直轄市達西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處理에關한條例制定(案)檢討報告및討論修正案要旨

1992. 11. 7

사회·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2. 9. 7
- 다. 회부일자 : 92. 9. 9
- 라. 상정일자 : 92. 9. 17
- 마. 재상정일자 : 92. 11. 7

2. 제안설명 : 생략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본 조례제정(안)은 92. 9. 17일자에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자료미비로 유보된 안건이며 제출자료를 검토한바 91. 3. 8 법률 제4362호에 의거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토론 요지

위원 간담회시 협의사항인 제4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중 분뇨의 수집, 운반시 주민이 직접 용량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제10조 제2항 제2호의 내용중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며 제10조 제3항의 내용 말미에 단서 조항으로 "각 업종 별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해야 한다"를 추가삽입하여 분뇨관련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해소 및 업체의 대주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가. 찬성자 : 김정해 위원, 손영일 위원, 박이찬 위원, 하중수 위원, 김영수 위원, 이기도 (12명) 위원, 박병기 위원, 이종택 위원, 권춘갑 위원, 김창식 위원, 전부진 위원, 박양현 위원

나. 반대자 : 없음

(단, 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부진 위원이 반대)

5. 수정안 요지

- 개정조례(안) 제4조 제2항 제4호 “수집,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”를 “수집,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시설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하며 탈취시설 확보”로 수정
- 제10조 내용중 제2항 제2호 “허가기간 : 3년(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)”을 “허가기간 : 2년(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)”으로 수정하고 제3항의 추가내용인 단서사항으로 “각 업종별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해야 한다”를 삽입.

6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7. 첨부 : 개정조례(안) 1부.

大邱直轄市達西區污水·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(案)

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, 제32조, 제34조, 제35조,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.

제 3 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및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 장 분뇨의 처리

제 4 조(분뇨의 처리)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, 운반,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,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분뇨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
2. 대행기간
3.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
4. 수집,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확보
5.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

6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, 영,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조(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)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,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, 운반 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단,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- 1.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
- 2.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,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

제 6 조(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 등)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대구직할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징수 대행케하여 시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축산폐수의 처리

제 7 조(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비용부담)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당해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당해시설을 설치, 운영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므로써 축산업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, 성상, 오염물질의 농도,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의 징수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 8 조(가축사육의 제한)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. 다만 애완용, 방법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

⑤ 제4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9조(가축사육의 허가 등) 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주민등록등본
- 2. 사육지 위치도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가축사육 허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,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

제10조(분뇨관련영업)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.

- 1. 영업구역 : 달서구 관할 (동)
- 2. 허가기간 : 3년 (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)

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과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허가에 따른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11 조(분뇨관련영업 요금) 법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다음 각호 1과 같다.

1. 분뇨수집, 운반요금 : 18ℓ당 214원 (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포함)

2. 정화조 청소요금

가. 기본요금 : 0.75㎡당 12,350원

나. 초과요금 : 0.75㎡당 초과시 0.1㎡마다 893원 가산

“주” 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 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(1ℓ당 1원)가 포함된 요금임.

제 5 장 보 칙

제 12 조(보고, 검사) 구청장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자,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,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,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(과태료 징수절차)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며,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1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등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대구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,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, 대구직할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.

제 3 조 (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과조치)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1호의 별표1중 분뇨수거료와 3호의 별표2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액표는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 될때까지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 의하며, 달서구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분뇨관련 영업요금으로 본다.